

● **환경부령 제1056호**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10월 04일

환경부장관 인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내취야” 를 “내취야 하며,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” 로 한다.

별표 6 제2호가목1) 중 “화공안전·화공·가스·대기관리·수질관리·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·가스기능장” 을 “화공안전기술사·화공기술사·가스기술사·대기관리기술사·수질관리기술사·폐기물처리기술사·산업위생관리기술사·표면처리기술사·위험물기능장·가스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” 으로 하고, 같은 목 3) 중 “화공·화약류제조·산업안전·가스·산업위생관리·수질환경·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” 를 “화공기사·정밀화학기사·화약류제조기사·환경위해관리기사·화학분석기사·산업안전기사·가스기사·산업위생관리기사·수질환경기사·대기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” 로 하며, 같은 목 4) 중 “화약류제조·산업안전·수질환경·대기환경·폐기물처리·위험물·가스·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·위험물·가스기능사” 를 “화약류제조산업기사·산업안전산업기사·수질환경산업기사·대기환경산업기사·폐기물처리산업기사·위험물산업기사·가스산업기사·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·표면처리산업기사·환경기능사·위험물기능사·가스기능사·화학분석기능사·표면처리기능사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」(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” 로 한다.

별표 6의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(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가.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: 총 교육시간 중 8시간 이상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, 나머지 교육시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에 한정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(이하 “인터넷 교육” 이라 한다)으로 대체할 수 있다.
 - 나. 6개월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: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, 총 교육시간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2의2.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, 교육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.

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“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2항제4호”를 “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4항제4호”로 한다.

별지 제75호서식 출고량란의 “용도”를 “구매용도”로 한다.

환경부령 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 6의2 비고 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개정 및 주요내용>

○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마다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·기능장·산업기사·기능사 등 9종의 자격을 추가하고,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온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,

○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종전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으나,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<환경부>